

행정안전부 제 호

읍·면·동 설치의 승인서

□ 승인 내용: 읍 설치(), 면 설치(), 동 설치()

시·도, 시·군	신설 읍·면·동의 명칭	관할구역(법정동)

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읍·면·동의 설치를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행정안전부장관

직인